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의 요약

- 접대비 손금불산입 : ① 1년 한도액 기준부인 ⊕ ② 투명증빙건당부인
(계산방법 : ② 부인액을 먼저 제외시키고 난 잔액에서 ①의 1년 한도액을 부인함.)
- ① 1년 한도액기준 : 기본액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사업연도월수/12개월 ⊕ 당 연도 수입금액×일정비율(수입 100억까지×20/1만+100억 초과 500억까지×10/1만+500억 초과액×3/1만, 매출수입에 대해 금융증권회사 등의 수수료는 9배로 계산함.)
 - ② 접대 1건당 1만원 초과하는 경우 투명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회자반행세금계산서, 적격원천징수영수증) 없는 접대비(1만원까지는 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 등도 손금산입됨. 건당 1만원 초과에서 투명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 초과부터 손금불산입되며, 20만원까지는 내부영수증만으로 세무상 접대비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되며, 2001년부터는 법인카드사용분만 손금가능하며 개인카드분은 부인됨), 또한 위장가맹점카드접대비는 무조건 부인됨.
 - ③ 접대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한 접대비명세서 작성·보관 규정은 삭제됨.
 - ④ 그러나 증빙구비가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거래분은 법적증빙예외를 인정함.
 - ⑤ 광고선전목적의 견본품이라도 특정고객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반영함(특정고객이라도 연 3만원 한도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 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 본 조의 개관

1)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의 개요

법인의 익금창출을 위한 손금의 하나인 접대비는 필수적 경비는 아니더라도 부수적 경비에는 해당되므로 일정한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첫째, 1년 총액한도로 기본적으로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수입금액의 0.2%부터 0.03%를 다단계 누진율로 곱한 금액을 합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부투자기관간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을 덜해도 거래가 용이하다고 보아 위 수입금액 적용률의 30%로 경감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정책 목적상으로는 이러한 사업이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둘째, 접대건당 부인으로 접대비 각 지출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2005. 1. 1부터 현금영수증도 포함)·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의 투명지출증빙이 입수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도록 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법인신용카드사용분에 한해 접대비개념의 손금가능하며 개인신용카드사용분은 그대로 부인한다. 또한 위장가맹점카드지출분은 원천부인된다. 다만, 접대건당(부가세·봉사료 포함) 50만원 이상시 접대자,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 입증 규정은 2009년부터 실효성 없어 삭제되었다.

셋째, 이러한 접대비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이외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총 접대비의 80% 내지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회 접대비 지출액 1만원 초과인 경우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한 경우만 손비인정되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므로 2002년부터는 실효성 없어 삭제하였다.

접대비는 교체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으로 지

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고객이라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비인정하며, 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밀비는 99년에 한해 접대비 손금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인정되며 2000년부터는 폐지됐다.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며 시부인계산으로 인한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면 먼저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부터 부인하고 이연자산·건설가계정·고정자산의 순서로 감액처리한다.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접대한 때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중전의 접대비지출명세서제출 제도는 건당 1만원 초과액의 적격증빙의무화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2)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이유

접대비는 법인의 수익창출 및 사업운영상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일반원가의 하나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손금산입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접대비는 대부분 소비성 지출 내지는 불건전한 지출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비용이나 원가를 억제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부수적 효과로서 기업의 자본축적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대비 지출액 전액을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법인이 접대비 지출을 남용할 수 있고 기업의 부실이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되기도 할 뿐 아니라 소비성 지출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소비풍토를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상 접대비 지출액을 엄격히 규제한 것이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접대비 지출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의 확보와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축적과 세원의 배양 및 간접적인 국가경제발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일정도까지의 접대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서비스업의 거래외형금액이나 소득금

액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출건당 1만원, 외부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투명증빙을 입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분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따라서 건당 1만원까지의 현금접대비·신용카드영수증없는 경우도 불이익은 없다).

2. 접대비의 의의와 유형 (법 제25조)

1) 접대비의 의의와 요건

① 업무관련 무상지출

일반적으로 접대비란 타인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되는데 조세법상의 접대비란 타인의 접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기본전제 뿐 아니라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영향을 주는 규범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접대비의 개념을 정리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임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법인입장에서의 내부의사에 따라 여러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는 대외적으로는 감추고 싶은 항목이므로 실제로 접대비이면서도 판매촉진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복리후생비 등의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회계처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기타 업무 필수경비 항목에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실판단이 필요한데, 접대비로 분류되는 필수 성격은 지출하는 금액이 업무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을 위하여 외견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업무와의 직·간접 관련성

법인의 모든 지출은 직·간접으로 업무와 관련을 갖는데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지출이나 원가·비용은 어떤 한도도 없이 전액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업무수행의 필수적 항목으로 보지 않아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인정하는데 이 경우도 업무에 관련된 지출금액만 접대비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에 관련되어야 하는 뜻은 사실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결국 업무

와 관련성을 맺는 지출은 법인의 거래처, 이해 관계자, 자금 관련 은행 등 매출상대방이나 매입상대방들이다. 또한 접대비란 법인업무 수행의 원활화와 편리성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절차상 지출행위와 연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모임장소, 교제를 위한 수단, 업무상 이익을 얻기 위한 직·간접 행위 등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금액 또한 이런 범위를 수행할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③ **특정인·특정법인을 위한 비대응성 제공**

접대란 원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외관상 계량적으로는 접대지출 자체에 대응하며 귀속되는 수익이나 이익은 없다. 즉, 특정인을 위해 무상이나 어떤 조건없이 향응이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지출인 것이다. 만일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을 위한 향응제공은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혹은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다. 외부의 특정인이 아닌 법인내부의 임직원을 위한 통상적 향응 지출은 복리후생비라 볼 수 있다.

④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접대비의 판정**

모든 세법상의 판단과 같이 명목이 어떻게 계상되었다 하여도 실제 접대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나 재화·용역은 모두 접대비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시행령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임원 및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출하면 본 조의 접대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지출이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임원 및 사용인이면 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각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2) 접대비의 유명과 범위

(1) 교제비

법인의 업무관련 사업상 필요에 의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교제비라 칭하고 이는 접대비에 포함된다.

(2) 기밀비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우 기밀비 한도액계산의 범위내에 있는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에 의거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3항단서의 기밀비는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접대비손비한도계산액의 10%까지만 접대비로 보며, 2000년부터는 폐지되었다. 접대비로 본 기밀비는 투명지출제출대상이 아니다.

(3) 사례금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을 사례금이라 칭하며 이를 접대비로 본다.

(4) 기타 접대비와 유사한 업무관련 지출비용

① 임의적 매출할인·뜯족날죽 장려금 등의 지급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외상매출금 결제시 매출 할인한 금액 등은 판매비·일반관리비로 인정된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등은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이므로 한도액없이 전액 손금산입한다. 즉,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판매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취 정상적 거래범위내에서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즉,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접

대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적 판매장려금, 동일조건이 아닌 임의적 할인액 등은 접대비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사용인조합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지출법인과 별도의 다른 법인이면 접대비로 본다. 즉,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나 동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그 지출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금액 한도액없이 전액 손금산입된다. 그리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아닌 고객 등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은 동 임의단체가 법인이나 아니냐에 불구하고 모두 접대비로 본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노동조합지부 보조금의 손금부인**

사우회 등은 회사의 일부조직이므로 관련지출이 있다면 이는 법인 경리의 일부, 즉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한 보조금을 접대비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지정기부금이나 법인경리의 일부로도 보지 않으며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이다.

④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금액**

매출채권을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본다. 소멸시효 경과 등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대손금이다.

(5) 금융기관 등의 계약·수금관련 지출경비**① 금융기관 등의 적금·보험의 계약비·수금비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등임**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로 보았으나 실제의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및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②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 등

종업원 등에게 적금·보험 등의 계약, 수금 및 유치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실적급이 지급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고 일반비용이다. 수금관련 용역비나 인건비 등은 비용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임의 외부지출비용이 접대비라는 뜻이다.

(6) 자산으로 계상한 비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이연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지출액이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계상된 접대비에 합산하여 총액 시부인계산한다.

3) 접대비와 다른 유사 관련비용과의 구분**(1)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① 불특정·무차별 조건과 특정고객**

접대비도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이지만 그 대가가 무상이고 지출의 효과가 경제적으로 계량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부대비용은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고 지출효과가 계량적·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접대비는 특정인이나 특정고객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지출되나 판매부대비는 모든 고객에게 무차별

적으로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② 판매부대비와 접대비구분의 예시

- 접대비 : 특정거래처 사은품, 판매후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경품, 임의적 품목, 판매가격에 영향주지 않는 부수품, 비계량적 불균등임의증정
- 판매부대비 : 모든 거래 고객에 대한 사은품, 판매촉진을 위해 미리부터 조건부 등으로 제시한 경품, 조건부 품목, 판매가액을 상승시키는 부속품, 계량적·형평적 증정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① 불특정다수인과 특정고객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한 지출로 전액 손금산입된다.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및 유사한 물품 등으로 기증하거나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일반손금경비로 본다. 그러나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정고객의 경우에도 소액광고선전비(1인당 연간 3만원 한도)의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당 물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9조 【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②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구분 예시

- 산업시찰·견학 등을 위한 내방객에게 자사제품의 시음, 음식접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자산상품 판매처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광고보조비는 광고선전비로 구분
- 신제품 전시회나 백화점·슈퍼·가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시식, 다과, 식대 등은 광고선전비로 구분
- 제약회사가 거래처약국, 병원 등에 환자치료용 약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

③ 광고비로 본 접대성 항목의 사례

-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견본품 제공
- 음료사업자의 간판제공
- 주유소가 자기 상호 새겨서 제공하는 화장지
- 방문고객에 대한 외관원의 시음용 상품
- 구매의욕 자극위한 불특정다수인 위한 지출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이라도 연간 3만원 이내 또는 건당 5,000원 이하 지출

(3)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① 업무관련 기증·업무관련 기증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된 것은 접대비, 업무에 직·간접 관련없는 것은 기부금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금품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② 접대비로 보는 업무관련 기증의 범위

사업거래관계상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원재료 및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 상품·제품이나 기타 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사업상의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보답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성질의

업무와 관련한 기증은 그 금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4) 복리후생비 등과 접대비의 구분

① 사회통념범위내의 지출여부

노무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업무능률향상, 노무의욕 고취 및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와 사용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적합한 범위내 지출금액은 손금이다. 그러나 사회통념 범위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급여로 비용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해당액을 손금 부인하면서 각 개인소득처분하여 과세한다.

② 복리후생비 등과 접대비 구분예시

유휴향응위한 지출이라도 법인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이다. 너무 지나친 금액은 전액 손금부인되나 합리적 금액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이월결손금 차감후의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다.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고급유휴업소에서 먹고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잉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 처분한다. 그러나 노사분규의 사전방지 또는 분규수습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지출한 음식물대는 회의비로 구분한다.

(5) 외의비 및 견본비와 접대비의 구분

① 견본비의 개념

견본비는 상품·제품 등의 판매교섭을 위하여 반환조건 없이 거래처에 제공 하는 상품·제품으로 한다. 다만, 견본품의 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귀금속·고가가구류·고가의류 등)은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② 회의비의 구분방법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목적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을 포함) 등을 포함한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통상의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③ 회의의 사실판단 요건

회의는 일반적으로 업무 직간접 회의를 말하는데 통상적 회의 소요비용은 당연히 전액 손금용인된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이익의 상황·회사의 관습·업계 기타 등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회의의 본질적 성격을 갖춘 회의라면 이론상 그 개최장소에 따라 달리 취급되지 아니하나, 현실적으로 호텔·여관·요정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본래 모습의 회의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접대비로도 분류될 수 있다. 회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판단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접대비의 금액결정과 계산

① 접대비의 가액결정

일반적으로 접대는 금품 제공이나 금전지출로 오락, 즐거움 제공과 기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였다면 접대비의 금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1. 3. 31 개정)

② 사업상 증여가액에 부가가치세 가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된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보아 당해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 관련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인 제품배달 차량을 사준 경우 접대비는 1,100만원이 된다.

II.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계산 (법 제25조제1항)

1.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

1) 업무관련성과 거증책임의 귀속

①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접대비는 그 지출의 상대방·지출목적·지출금액·접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무관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99년부터는 접대건당 5만원 이상(2000년부터는 5만원 초과 : 2006년부터 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투명증빙이 의무화되었고, 지출증빙이 없으면

해당접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 된다. 2008년은 3만원으로, 2009년부터 1만원 (거래처 등 경조사비 20만원)으로 강화된다. 법인의 접대비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은 거래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만으로는 세법 적용상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비치구비요령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거증을 증빙으로 비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음식·숙박제공과 증빙 없는 부대비용
- ◎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 기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영수증,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거래 매출전표도 사실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한다.
- ◎ 사용자를 기재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한 지출전표 또는 지출결의서(이하 “지출전표”라 한다)
- ◎ 봉사료·팁·교통비 등 증빙을 징구할 수 없는 접대부대비의 경우는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적정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비용의 사용자와 계산내역을 명시한 지출전표
- ② 물품기증과 사례금의 경우
- ◎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등(구입물품에 한함)
- ◎ 물품의 사용부서별 내역을 기재한 지출전표 및 사용부서 책임자의 물품인수증
- ◎ 사례금(금품지급)인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기재한 지출결의서
- ◎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③ 기밀비나 경조비의 경우

- ◎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 ⇒ 지급기준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 :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업무와 관련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 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한다.
- ◎ 기밀비 사용자의 수령증
- ◎ 경조비인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지급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 ◎ 기밀비는 접대비 일종으로서 당연히 투명지출증빙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되지만 99년에 한해 접대비의 10% 범위내에서는 증빙없어도 손금산입 가능했음(2000년부터는 증빙없는 기밀비는 무조건 손금부인).

④ 매출할인·장려금 등에서 임의지출

- ◎ 지급받은 자의 영수증, 송금 관련서류
- ◎ 지급금액의 계산근거가 명시된 지출전표

⑤ 금융기관 등의 계약·수금비 등

- ◎ 기밀비 해당금액을 제외하며 사례금은 포함.
- ◎ 지출형태(음식접대·물품기증·금품사례)에 따른 거래증빙
- ◎ 지출원인과 지출자를 명시한 지출전표

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및 산식

(법 제25조제1항)

1)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산식

(1)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산식규정

① 계산방법과 계산요소

본 조 제1항은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을 위해 제1호의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과 제2호의 수입금액의 다단계 역누진비율[100억까지 0.2%, 100억부터 500억까지 0.1%, 500억 초과는 0.03%, 정부투자기관의 수입은 상기 수입금액 적용률의 70%(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계산금액] 등의 2가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합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9년에는 같은 금액 구간별로 100억까지 0.3%, 100억 초과 500억까지 0.15%, 500억 초과는 0.04%이며, 98년은 수입금액 다단계 누진율을 각각 0.3%, 0.2%, 0.06%이었는데, 수입금액별 인정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괄한도금액범위 계산에서 본 조 제2항의 투명지출증빙불비로 부인된 접대비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중복부인문제는 없다.

②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일반적인 수입금액×0.2% 내지 0.03%(100억×0.2+100억 초과에서 500억까지×0.1%+500억 초과×0.03%)·(같은 매출액·수입금액단계에 대해 98년은 0.3%·0.2%·0.06%, 99년은 0.3%·0.15%·0.04%, 2000년도부터는 0.2%·0.1%·0.03%임)

(정부출자기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적용률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가 규정하고 있음)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조특법 제36조제3항).

③ 97, 98, 99, 2000년 이후 중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의 전년 비교 및 적용방법

기업의 투명거래 및 경제정의를 위해 접대비한도액계산이 98년부터 상당히 내려가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전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기간별로 비교한다.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계산 방법의 97년·98년·99년·2000년 이후 변경비교 ▣

개 념		97년말까지 계산(97년 말 법인 및 98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 말 일이 되는 기존법인)	98년부터 계산(9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99년·2000년도 이후 계속	
기본금액		2,400만원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자기자본기준		자기 자본 (50 억 원 까 지) × 1% (중 소 기 업 은 2%)	없어짐(자기자본기준금액은 계산안됨). ※ 중소기업에 한해 자기자본(50억원 한도)×1%(98. 12. 31까지 개시 사업연도에 한함)	없어짐.	
접대비건당 1만원 이상 투영증빙				09년부터 접대비지출 건당 1만원 초과(08년은 3만원 초과)적격투명 증빙요건 개정됨(적격투명증빙 없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수입 금액 기준			98년	99년	2천년부터
	100억 이하	0.3%	0.3%	0.3%	0.2%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천만원 초과액×0.2%	3천만원+초과액×0.2%	3천만원 + 초과액×0.15%	2천만원 + 초과액×0.1%
	500억 초과	1.1억원+0.1%	1.1억원+초과액×0.06%	9천만원 + 초과액×0.04%	6천만원 + 초과액×0.03%
부동 산업·소비성 서비스업거래의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0.05%(중소기업의 특수관계매출 수입×0.1%)	각 관계마다 각 연도마다 상기와 같이 계산된 금액×20%(즉 수입금액 접대비 한도계산금액은 일반한도계산금액의 20%만 해당됨)	상기 수입금액×70% (2006년부터는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비용 인정)	
증권회사 등 수입 금액 해당 계산방법		수익증권매각대금×80% 제외 유가증권매각대금×70% 제외	→20%로 개념바뀜 (전과동일) →30%로 개념바뀜 (전과동일)	2001년 수익증권매각대금×5%, 위탁유가증권매각대금×8%, 증권투자회사 주식매각대금×5% ※운용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제외	2002년 이후 • 증권회사·위탁회사·자산운용회사: 매출액+수익증권판매 등 수수료의 9배 • 신용보증사업영위법인: 매출액+수입보증료 6배
공공법인		일반법인과 차이 없음.	일반법인기준 접대비한도액×70%가 한도임.	일반법인한도액×70% (조특법 제136조제2항)	
금융기관접대비 별도 규정		• 적금권유비: 적금×0.1% • 부금등: 부금×0.1% •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2% • 신탁계약액×0.1%	적금×0.5% 부금×0.5%	적금·보험계약·수금비는 일반 접대비임. 그러나 영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99년말까지 개시연도에도 왼쪽내용 계속 적용가능, 즉 12월말 법인아니면 2000년 9월말 혹은 11월말 법인도 0.5%	

	• 할인어음매출액 × 0.1%		등의 한도 인정됨. (2008년부터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으로 처리함).	
해외접대비	폐지됨.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의무비용	서울특별시 : 5% 광역시 : 60% 시지역 : 50% 군지역 : 40% 600만원 이하는 면제	→80% →70% →60% →50% 600만원 이하는 면제	좌 동	2002년부터는 폐지됨.
기밀비	①자기자본(50억원 한도)×1% ②수입금액×0.035% (중소기업은 0.05%) 상기 ①+②가 한도	①자기자본(50억 한도)×1% ②수입금액×0.035% (중소기업은 0.05%) ①과 ②의 합계 또는 또한 하나의 한도신설(접대비 세무상 한도계산액×20%가 한도임)	좌 동 • 99년에 한해 접대비손금한도범위액×10%만 인정 • 2000년부터는 없어짐.	
지정기부금	사업연도소득×7% + 자기자본(50억 한도)×2%	(각 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5%	(각 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10%	

* 성실중소법인은 2008년부터 정액한도로 연 1,900만원까지 접대비 인정함.

(2) 기본금액 1,200만원과 사업연도 월수계산 (법 제25조제1항제1호)

① 기본금액의 연 안분계산

법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가 12개월인 법인은 무조건 1,200만원이 되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그 월수에 따라 해당월수 비율 해당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중소기업은 1년당 1,800만원이다.

이밖에 신설법인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설립등기상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01년 6월 14일에 신설한 법인으로서 첫 사업연도가 01년 6월 14일부터 01년 12월 31일이라면 사업연도 개시일인 6월이 포함되므로 사업연도 월수는 7개월이다.

② 역에 따른 계산

기간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3) 자기자본의 계산

(98년에 안하여 중소기업에만 적용하였고 99년부터는 모두 폐지됨)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함)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100분의 1(중소기업만)를 곱하여 한도계산 금액의 하자가 산출되었었다(99년부터는 모두 폐지됨).

2) 수입금액 계산

(1) 일반적인 수입금액

①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개념과 계산방법**

일반적인 수입금액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 중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익금액(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익금만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개념에 따른 영업수익금액이란 매출액 등 주영업 수입금액이다. 이는 법인이 표방하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재고 재화 또는 주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현금수입과 현금등가물 가액을 말한다.

② **관세환급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수입물품의 국경통과 소비세인 관세는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과세 종결되나 국내 소비되지 않고 국외로 재반출되거나 수출된다면 기왕에 납부한 관세라도 환급된다. 이때 미리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시에 총액을 매출원가나 제조원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환급 예상액을 선납세액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므로

수입금액에 영향이 없다. 이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관세가 환급됨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 수출자나 내국 수출품 공급자는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데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수출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관세환급금은 영업수익에 해당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관세환급금을 정부로부터 자기명의로 직접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직접 차감처리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손익차에는 영향이 없고 접대비 등 한도액에는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2) 접대비안도 계산시 일반수입금액만 해당

①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범위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 투자신탁 운용수수료, 수입보증료를 말한다. 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6. 3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9. 2. 4 신설)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반적 영업수입·매출액만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일반매출액을 말하므로 영업외 수익 등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인데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하며, 금융업의 수수료 등은 총 거래액×일정률이 매출액이므로 접대비한도 계산시 배율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탁매매·중개,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 「한국투자공사법」상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수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보증료도 수입금액 포함하되, 이러한 금액은 수수료이므로 금액의 9배를 반영한다. 또한 신용보증사업 영위법인의 수입보증료의 경우는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반영된다.

③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수입금액 범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되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6. 3. 14 개정)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법상 개념

①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계산특례의 이유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납품 하청관계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먹고 살기힘든 것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접대비나 뒷돈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따라서 조세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은 1,800만원(일반법인은 1,200만원)으로 하여 규모가 작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도록 하였고, 수입

금액이 적은 경우는 0.2%(100억까지), 중간은 0.1%(500억까지), 높으면 0.03%(500억 초과)를 적용하여 숫자의 구조상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계산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②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다음의 첨부 규정을 요약하면 i)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건축·공학·기술검사서비스업·정보처리·컴퓨터이용관련업·자동차정비공장사업·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ii) 상시 종업원수가 약 300인 이하 이거나 혹은 자본금 80억(30억)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200억) 이하 중의 어느 한 기준을 만족시키며, iii) 실질적 독립성 있는 기업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2001년부터는 인적기준(인원수)과 물적기준(자본금이거나 혹은 매출액 등) 중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도록 넓게 규정하였다. 물적기준에서도 제조·광업 등은 주로 자본금기준이, 도소매·방송·서비스·부동산업 등은 매출액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

획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④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개정)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009. 11. 19 개정)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 3. 25 신설)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 3. 25 신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2009. 3. 25 개정)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

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2009. 11. 19 개정)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별표 1] (2009. 3. 25 개정)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2011. 1. 28 개정)

☐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 (제7조의2 관련)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

과 같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3. 각 접대비지출에 대한 투명증빙 미입수금액의 손금불산입 (법 제25조제2항)

① 각 접대지출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에 대한 투명증빙입수 의무

접대관련 지출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업무관련성이라는 개념하에서 비용·손금처리하는 것이므로 관련증빙이 있어야 한다.

관련증빙 자체가 아예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이나 부실지출이 되어 원천적으로 손금불산입된다.

관련증빙으로는 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일반개인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접대건당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는 영수증(구간이세금계산서, 일상적 표현으로 간이영수증)으로도 관련증빙이 인정될 수 있으나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계산서(정식계산서, 주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입수되지 않으면 99년 1월 1일부터의 거래지출금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증빙수취가 곤란한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비록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투명증빙입수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종전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도는 폐지되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② 투명증빙의 범위와 유형

접대건당(각 거래구분단위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액의 지출에 대해 우선적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투명증빙이 입수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특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2005. 1. 1부터) 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면세사업자), ③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④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영수증

상기 ①·②·③·④는 거래사업자의 거래외형 및 소득금액이 노출되며, 각 매출자·매입자가 관련 거래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검증(cross-check)되는 증빙들이다. 그러나 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은 투명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출은 접대비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③ 거래처 경조사비 및 투명증빙 없는 거래

임직원·종업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지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범주에 속하는데, 외부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투명증빙자체가 원천적으로 입수불가능하다. 현재 이를 예외규정하여 접대비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나 시행규칙은 없는데, 일종의 기밀비로 보아 기밀비는 손금인정접대비×10% 한도가 99년말까지는 가능한 것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④ 투명증빙 없는 경우의 불이익

- 접대건당 1만원까지 : 투명증빙없어도 접대비 인정되고 제1항의 총액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됨.
 - 접대건당 1만원 초과 : 투명증빙있어야 접대비인정(총액한도 범위내에서)되며, 없으면 해당 접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됨. 일단 손금불산입된 경우는 제1항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도 원천적으로 빠져 이종의 손금불산입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으며, 투명증빙없어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거래지출에 대해서는 본 법 제76조제5항의 2% 가산세 규정(건당 1만원 초과 일반거래의 지출증빙 없는 경우)이 적용되지 않음(법 시행령 제120조제4항 규정).
- ⇒ 결손법인이라면 투명증빙없는 거래에 대하여 접대비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적용되어도 세액추가되는 부담은 없으나 일반지출로 회계처리된 상태에서 투명증빙 없으면 지출액×2%의 가산세는 적용됨.
- 지출증빙없는 거래의 접대비·일반비 계정처리 장단점 : 이는 직접적 세액부담임. 즉 결손법인으로서 건당 1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지출증빙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지출액×2%의 직접적 가산세 부담보다는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불산입이 직접 세금유출 부담이 없어 유리함(결손법인의 경우 지출성격이 애매한 경우 접대비 계정처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임). 그러나 이익법인은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법인세(약 30%) 보다는 2%의 가산세가 더 적음.

4.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용접대비 아님

(법 제25조제3항)

① 위장가맹점 퇴치통한 과표현실화 도모

지출증빙입수·구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명의·상호·사업상 소재지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위장가맹점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접대비로 간주된다. 즉 신용카드전표가 있어도 위장전표거래분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신용카드·세금계산서·직불카드 포함

직불카드와 외국신용카드도 포함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5.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가능

① 2001년부터 접대비는 법인카드에 한함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에는 개인카드도 가능하나 2001년부터는 5만원(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는 법인명의 카드사용분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면

내역	99년	2000년	2001년부터
법인카드로 1만원 초과 접대비 사용시점	개인카드 가능 (손금산입)	좌 동	법인카드만 비용인정 (개인카드는 손금불산입)

시행령 규정과 관련 부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시행령 부칙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결정

① 접대행위발생에 따른 발생주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그 지출한 사실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데 여기서 지출한 사실이 있는 사업연도란 실제 접대·향응·위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말한다. 따라서 접대행위는 실제 이루어졌는데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지급비용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포함시켜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 접대행위를 한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와 같이 접대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발생주의에 의해 처리되므로 현금주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기부금과는 다르다.

② 자산 등 이연계상한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그리고 접대비를 자산이나 고정자산 등과 같이 자본적 지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즉 해당비용 손금산입 ⊖유보후 접대비계정에 포함하여 계산함)하는데 그 후 사업연도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는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처리한 기부금의 처리와는 반대이다.

III. 접대비 등의 세무조성과 관련업무

1. 접대비 지출시의 외계 및 세무처리

1) 접대비의 외계처리방법

① 접대비 등의 회계처리

접대비·사례금 등은 설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와 기밀비를 함께 기장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접대비 또는 기밀비로 본다. 그리고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관련 내용은 기부금회계처리 참조).

② 접대비의 지출부담과 공동부담시의 안분 계산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접대·향응·위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거나 동업자의 단체가 접대·향응·위안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그것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비인 경우에만 접대비가 된다.

또한 접대비 지출자가 두 회사의 임원직을 겸직한 경우 당해 지출자가 지출한 접대비는 업무수행한 사실의 귀속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업무수행 사실이 어느 법인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수익금액이나 거래금액 및 접대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안분하는 방법 등과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접대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접대비의 세무처리 방법

(1) 접대비의 일반적인 세무조정방법

①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세무조정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의유출로 처분한다.

② 요건불비한 접대비의 세무조정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으로서 지출증빙이 명확하면 기타사의유출로 처리하나,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직접 손금불산입(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는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안도 초과액의 세무조정방법

① 자산계정상 손금불산입 해당액의 감액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도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접대비 중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가 기계설비·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이연처리된 금액이라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데,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는 당기 비용처리한 접대비, 건설가계정 및 고정자산순으로 세법상 감액처리한다.

②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손비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경우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제조경비에의 당기 반영분)

에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한 결과 한도초과액이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액이 모두 당기 손비계상한 접대비계정 금액에서 부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의유출로 처분 종결한다. 또한 계상된 자산가액에서는 감액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접대비는 특별히 부인되지 않고 당해 자산가액으로 인정되며, 향후 세무조정에 영향 없다.

③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의 세무조정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제조경비)에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한 결과 한도초과액이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계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우선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계정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의유출로 처분한 다음 나머지 차액은 당해 자산가액에서 감액처리한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여러 가지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순으로 감액 처리한다. 여기서 '감액처리한다' 함은 계상된 취득원가를 세무상 부인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결국 계속적인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④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액을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의 한도초과액은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자산계정에서 감액처리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해 자산계정에서 감액처리하는 금액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즉,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의유출로 처분하고 동시에 동액 만큼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한 후에 무형자산을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는 동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⑤ 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방법

손금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당기 손금불산입될 감가상각비]
 =감액대상 고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계상액
 $\times \frac{\text{감액계상액의 잔액}}{\text{당해연도 감액대상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계상 전 장부가액}}$

위 공식에 있어서 감액계상액잔액이란 감액처리한 자산의 1차년도에는 감액 처리한 금액 전액이 해당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감액처리한 금액 전액에서 1차년도부터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작성사례

【사 례】

-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제조·기계)(중소기업 아니고 일반법인임)
 - 매출액(국내) : 490억원
 - 매출액(수출) : 300억원
 - 잡수익(기타 매출) : 10억원

} 800억원
- 접대비 및 유사비용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접대비 1억원(해외접대비 25,000,000원 포함. 총액 1억원임)
 - 제조경비 접대비 5천만원(투명증빙불비금액 5,000,000원 포함)
 - 광고선전비 중 접대비 1천만원(자가생산제품기증분 원가로 계상)
→ 판매가액환산 시가 15,000,000원
 - 매출할인 2천만원(사후임의할인액 1천만원)
 - 잡비 중 접대비 해당액 1천만원
 - 자산계상액 중 접대비 해당액 :
개업비 3,000,000원 중 300,000원(당해 사업연도 상각비계상액 1,000,000원)
 - 건설가계정(건물) 중 200,000,000원(당해 사업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 20억원

-감가상각비 : 5백만원

1)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작성예시

① 수입금액명세서

⑰ 업 태	⑱ 종 목	⑲ 수입금액
도 매	섬유(국내)	50,000,000,000
	섬유(수출)	30,000,000,000
계		80,000,000,000

수입금액 ⑲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접대비 해당액계산

⑳ 과목	㉕ 계정금액	㉖접대비해당액	㉗기밀비해당액	㉘원천부인액	㉚기타	비고
일반관리비 접대비	100,000,000	100,000,000				
제조경비 접대비	50,000,000	45,000,000		5,000,000		
광고선전비	10,000,000	15,000,000 (시가)				
매출할인	20,000,000	10,000,000				
잡비	10,000,000	10,000,000				
개업비	300,000	300,000				
건물	200,000,000	200,000,000				
계		380,300,000				

⇨ 접대비 중 투명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5,000,000원은 접대비에서 처음부터 제외

⇨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거래처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가생산 제품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 상당액으로 환산함(회사는 생산원가로 계상).

⇨ 매출할인 중 거래처 외상매출금의 사후 임의할인액 10,000,000원은 접대비에 해당

⇨ 잡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은 10,000,000원임.

- ⇒ 건물취득가액 중 접대비 해당액 200,000,000원은 접대비에 포함.
- ⇒ 개업비 중 접대비 해당액 300,000원은 접대비에 포함.

③ 접대비 한도초과액계산

○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

구 분	금 액	비 고
① 12,000,000×월수(12)/12	12,000,000	
② 기준수입금액(㉓)×0.2%+0.1%)	69,000,000	100억×0.2%+400억×0.1%+300억×0.03%
③ 접대비 한도액(①+②)	81,000,000	
④ 접대비 해당금액	380,300,000	
⑤ 접대비 한도초과액(③-④)	299,300,000	

2) 접대비조정명세서 관련 세무조정

- ⇒ 접대비 중 투명지출증빙이 없는 금액(5,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애초부터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제외
- ⇒ 접대비한도 초과금액(229,3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접대비)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사 항	해당 여부	검토 내용	비 고
1. 접대비의 범위	① 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② 접대비계정의 다른 계정과목을 조사하였는가 ③ 접대비 지출액이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었는가 ④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이 있는가 ⑤ 지급한 매출할인 및 장려금이 있는가			
2. 접대비 가액결정	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였는가 ②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로 결정했는가			
3. 접대비 손금인식 시기	①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였는가 ② 미지급된 금액도 접대비로 손비 처리하였는가 ③ 이연처리한 접대비도 확인하였는가			

4.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	① 지출한 접대비는 모두 증빙이 있는가 ② 증빙이 아예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였는가 ③ 접대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에 대해 투명증빙 있는가 ④ 건당 1만원까지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적합한 증빙있는가			
5. 기본금액	① 기본 1,2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감안하였는가 (중소기업은 1,800만원)			
6. 수입금액	① 일반적인 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였는가 ②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공제하였는가 ③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기준검토표를 작성해보았는가 ④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수입금액과 일치하는가			
7. 신용카드 사용	① 접대비에 대해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은 있는가(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는 법인카드 사용) ②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접대비가 있는가(신용카드 사용접대비 아님)			
8. 세무조정 사항	① 건별 1만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분 부인 ② 법인카드 미사용분은 부인 ③ 접대비 계산상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였는가 ④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초과액 손금불산입 ⑤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감액처리하였는가 ⑥ 감액처리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는가			